

특 허 협 력 조 약  
(PATENT COOPERATION TREATY)

발신: 수리관청

PCT

수신:  
김종해  
대한민국 1012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16 101동 701호

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

(PCT 규칙 26bis.1 및 26bis.2;  
PCT 시행세칙 302 및 314)

발송일 (일/월/년) 2018년 09월 21일 (21.09.2018)

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 
SOLARCELL

중요통지사항

국제출원번호  
PCT/KR2018/007699

국제출원일 (일/월/년) 2018년 07월 06일 (06.07.2018)

출원인  
김종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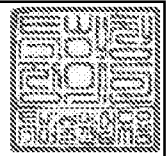
이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1.  우선권주장의 보정. 2018년 09월 19일 (19.09.2018) 자로 접수된 출원인의 통지서에 따라서 아래의 우선권주장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었습니다: KR 2018년 03월 20일 (20.03.2018)10-2018-0031923
  - 비록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
  - 비록 우선권주장의 아래 기재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:
  - 비록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(priority period) 만료 후이나,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
  
2.  우선권주장의 추가. \_\_\_\_\_ 자로 접수된 출원인의 통지서에 따라서 아래의 우선권주장이 추가되었습니다.
  - 비록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
  - 비록 우선권주장의 다음 기재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:
  - 비록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(priority period) 만료 후이나,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
  
3.  아래의 사유로 해당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(규칙 26조의 2.2(b)).
  - 규칙 26조의 2.1(a)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시점에, 출원인으로부터 서식 PCT/RO/110에 통지된 바와 같이 규칙 4.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는 통지서가 수리관청에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.
  - 출원인의 통지서가 규칙 26조의 1(a)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 후에 접수되었습니다. 따라서 우선권주장은 규칙 4.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정될 수 없었습니다.
  - 출원인의 통지서가 규칙 4.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충족되도록 보정되지 못하였습니다.

출원인은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, 국제사무국은 동 정보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할 것입니다(규칙 26조의 2.2(d)).

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 
대한민국 특허청  
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 
정부대전청사  
팩스번호: +82 42 472 3473

특허청장  
전화번호 82-42-481-8755



4.  상기 1. 및/또는 2.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보정 및/또는 추가, 또는 상기 3.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무효간주의 결과 우선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  
2018년 03월 20일 (20.03.2018)

5.  우선권주장은 출원인이 제출한 서면이 \_\_\_\_\_, 즉, 규칙 26조의2.1(a)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 후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보정/추가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출원인이 제출한 서면이 보정에 관련되는 경우, 규칙 26조의2.2(c)(i)부터 (iii)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제6기제란에 표시된 우선권주장은 무효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.

출원인은, 수수료납부를 조건으로,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 전에 동 사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규칙 26조의2.2(e) 및 PCT 출원인안내 부록 B2(1B) 참조.

6. 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이 행하여진 경우에는, 위 항(들)은 아래의 우선권주장(들)과 관련됩니다:

7. 이 통지서의 사본은 국제사무국 (및  국제조사기관)에 송부되었습니다.